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

의안 번호	1126
----------	------

제출년월일 : 2005. 8.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재원에 대한 내용 (안 제2조)

-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의 교부금 또는 출연금 등

나. 기금의 용도 (안 제3조)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다.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4조)

- 1) 기금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하고,

- 2) 구 금고에의 예치, 유가증권의 매입 등을 통하여 기금의 증식을 도모함

라. 기금의 운용심의 (안 제5조)

-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은 구에 설치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함

마. 지원대상 (안 제6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에게 기금을 지원함

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규모 및 상환조건에 대한 규정
(안 제8조)

- 1)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금액 결정

- 2) 기금의 상황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하여야 함
 - 3) 이자는 연 3퍼센트, 연체이자율은 연 15퍼센트를 적용함
- 사.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기금운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06년부터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2) 제정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또는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4.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5.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2.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및 결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및 단체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 ⑤자활공동체 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여하는 사업자금의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

- 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